

정원도시국

#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 □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 1건, 3,238,331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지급일	지급액	산출내역
		합계 (1건)		3,238,331	
1	조경과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배상금)	'25. 11. 13.	3,238,331	수용재결금 부족분(3,238백만원)

## □ 2025년 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 3건, 42,077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간주내역	금회간주	비고
		합계 (3건)	42,077	
1	정원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8차)	1,600	
2	동물보호과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7차)	765	
3	산지방재과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8차)	39,712	

#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

<조경과>

##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 예비비 사용내역 : 토지 보상 수용재결금(공탁금) 부족분 지급 (3,238,331천원)

## □ 예비비 사용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춘녹지) 보상 중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5. 6. 13.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25. 9. 26. 수용재결금 61,530백만원이 결정됨
-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승소)의 가능성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5. 11. 13.까지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함
-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 수용재결금 부족분(3,238백만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함('25.11.13.)

사업명	지급일	지급액	산출내역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배상금)	'25. 11. 13.	3,238,331천원	수용재결금 부족분

작성자	조경과장 : 온수진 ☎ 2133-2101 조경시설팀장 : 정지윤 ☎ 2115 담당 : 윤종국 ☎ 2118
-----	--

# 2025년 제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정원도시정책과, 동물보호과, 산지방재과>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총 3건, 42,077천원**

### 1)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국고보조), 8차

- 목 적 :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예산액 : 1,600천원
- 대 상 : 서울시 종로구, 강북구
- 내 용 :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  
※ 총 1,600천원: 종로구(1세대) 700천원, 강북구(1세대) 900천원

### 2)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국고보조), 7차

- 목 적 : 살처분 보상금 지급
- 예산액 : 765천원
- 대 상 : 서울시 강북구
- 내 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가축전염병(ASF) 발생 역학 관련 물건(돈육)을 폐기 처리한 소유자(강북구 1개소)에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 3)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비 - 국유림 긴급복구비(국고보조), 8차

- 목 적 : 2025.8월 산림피해지역 긴급복구비
- 예산액 : 39,712천원
- 대 상 : 서울시 은평구
- 내 용 :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산림 및 공원 내 위험절토사면 붕괴, 토사유실 등에 따른 피해가 한강이북 지역에 발생되어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를 통하여 신속히 복구하기 위함

붙임 간주처리(예정)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작성자	정원도시정책과장 : 안수연 ☎2133-2010	공원녹지협력팀장 : 신보식 ☎2039	담당 : 권우주 ☎2015
	동물보호과장 : 이미숙 ☎2133-7645	동물보건팀장 : 김연주 ☎7651	담당 : 조은정 ☎7654
	산지방재과장 : 유양현 ☎2133-2170	사면정비팀장 : 이동욱 ☎2184	담당 : 최서영 ☎2183

## ○ 간주처리 세부 내역(정원도시정책과)

## - 세입예산(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1,635,000	1,600	1,636,600

## - 세출예산(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1,635,000) 1,635,000	(x1,600) 1,600	(x1,636,600) 1,636,6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발제한구 역 주민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x1,635,000) 1,635,000	(x1,600) 1,600	(x1,636,600) 1,636,600

## ○ 간주처리 세부 내역(동물보호과)

## - 세입예산(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6,653	765	7,418

## - 세출예산(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6,653) 8,653	(x765) 765	(x7,418) 9,418
선진형 동물보호시 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금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08-01)	(x6,653) 8,653	(x765) 765	(x7,418) 9,418

○ 간주처리 세부 내역(산지방재과)

- 세입예산(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	39,712	39,712

- 세출예산(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	(×39,712) 39,712	(×39,712) 39,712
산림안전 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시설비 (401-01)	-	(×39,712) 39,712	(×39,712) 39,712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5년 5차)

■ 1. 녹색도시과-50011(2025.10.2.)호 관련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주민지원) 사업에 대해 불임과 같이 교부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서(담당자)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노현정主(044-201-3744)

불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주민지원, '25년 5차) 1부.  
2. 사업별 세부내역 1부.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녹색도시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행정 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날짜 2025. 10.

주무관

행정사무관

재정담당관

13.

류준하

신용화

이주얼

####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0217

(2025. 10. 13.)

접수 정월도시정책과-14683 (2025. 10. 14.)

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드림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247

/전송

044-201-5518

/ [rjh510mx@molit.go.kr](mailto:rjh510mx@molit.go.kr)

/ 비공개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5차]

수신 : 서울특별시장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하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 용자	수익자부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459	5,137	7,322	-	-

○ 보조비율 :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70%~90%

○ 사업내용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교부 목적

-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사업, 공동작업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이 취약한 구역지정 당시 거주세대의 생활비용보조사업 등 지원
-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경관·전통문화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열악한 구역주민 및 도시민에게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역의 보전가치 증진

□ 예산과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 및 지역 개발	142 지역 및 도시	5500 지역개발	5551 개발제한 구역지원	301 개발제한 구역 관리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5차\_생활비용보조)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136,600	5,135,000	5,136,600	1,600	0	

\* 보조사업별 세부내역 별첨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입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5. 10.

국토교통부장관

## ○ 사업별 교부 내역

###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5차, 생활비용보조) 교부금 현황

(단위: 원, %)

시·도	시·군·구	지원대상 선정현황			사업비			국비 매칭비율 (2024년 재정자립도 적용)	
		신청세대	선정세대	제외세대	계	국비	지방비		
12개 시도	합계	513	289	226	273,820,000	224,430,000	49,390,000		
서울 (2)	계	2	2	-	2,000,000	1,600,000	400,000	재정자립도	국비
	종로구	1	1		1,000,000	700,000	300,000	48.66	70%
	강북구	1	1		1,000,000	900,000	100,000	22.62	90%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제역방역과-5077호('25.8.19.)

첨탁거절은 단호하게 청렴실천은 담당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8차분)

1. 살처분 보상금 사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025년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e나 라도움 시스템상 교부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8차) 1부.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과장),광주광역시장(농업동물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동물정책과장),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구제역방역 전결 2025. 8. 19.

주무관	황경은	사무관	양성철	과장	김경주
-----	-----	-----	-----	----	-----

##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5077 (2025. 8. 19.) 접수 동물보호과-15142 (2025. 8. 19.)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전화 044-201-2544 / 전송 044-868-0469 / [hie0111@korea.kr](mailto:hie0111@korea.kr) / 비공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2025년 8차]

수신 : 시·도지사

1. 「산적분 보상금」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입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산적분 보상금
- 보조 사업자 : 시·도지사(자·군·구)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82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누담
설치분 보상금	100,268,750	80,215,000	20,053,750	-	-

- 보조비율 : ①(설치분보상금) 국비 80%, 지자체보조 20%, ②(기립불능우 폐기 보상금) 국비 100%, ③(폐업지원금) 국비 70%, 지자체보조 30%
- 사업내용 : 설치분 명령 대상 가축 등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의 평가액 지급

### □ 교부 목적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설치분(폐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
-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의 강화를 위하여 골절 등 영역한 부상을 예방한 기립불능우에 대하여 도상·처리를 급격하고 소유자에게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
- ASF 관련 설치분·농장의 세입식과정에서 강화된 시설기준을 완비하기 어려운 농장에 대한 폐업유도로 ASF 세발방지

### □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3300	3340	337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축산물안전관리	가축 방역	설치분보상금	지자체감상보조

###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기 교부액	교부 도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설치분보상금	78,847,238	58,792,590	5,147,019	5,147,019	13,907,620

### □ 자자체별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연간교부 결정액)	자금교부		
		기교부	금회교부	누계
서울	7,418	6,653	765	7,418
부산	2,160	2,160	0	2,160
대구	29,658	29,658	0	29,658
인천	230,172	230,172	0	230,172
광주	18,421	18,421	0	18,421
대전	0	0	0	0
울산	162,848	162,848	0	162,848
세종	4,904,963	2,456,065	2,448,898	4,904,963
경기	83,36,919	8,639,311	197,608	8,836,919
강원	2,870,000	2,870,000	0	2,870,000
충북	7,000,060	7,000,060	0	7,000,060
충남	12,109,971	12,109,971	0	12,109,971
전북	14,592,329	14,422,964	169,365	14,592,329
전남	9,122,800	6,848,200	2,274,600	9,122,800
경북	2,299,677	2,299,677	0	2,299,677
경남	2,664,222	2,608,439	55,783	2,664,222
제주	88,000	88,000	0	88,000
유 보액	13,907,620	-	-	-
계	78,847,238	59,792,590	5,147,019	64,939,618

### \*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할애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뢰하여 함.

다. 보조금 집행원으로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타. 기타 보조조건은 밀접 <보조금 교부조건>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하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범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농림사업시행자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 축산식품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적립 관련된 사업별 천재조건이 시장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충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입 보조금 교부조건 1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강점보조사업자가 포함되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설치분보상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좌지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강제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등록의 국고보조금을 함께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6. 거치체보조사업 및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자자체가 지정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품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쇠득하거나 그 효율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2.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통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이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초과의 사실공사 등 및 5천만원 초과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 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쥐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 보고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 반납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금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계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한급금액을 등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7. 보조금으로 쥐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쥐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쥐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쥐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현황을 쥐득 후 15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표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체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축전염병 예방법」, 「기축방역 사업 실시도정」 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입4

## 「산림재해 국유림 간접복구비」 간주처리 근거 서류

우리가 만족어가는 삶을 만들면 되는 현실, 희망, 현실



## 산 림 청



### 수신, 수신자 참조 (경우)

제목\_20125년 산림재해대책비(본예산)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 알림(12차-산사태)

1. 기획재정담당관실-4366(2025.10.27.)호와 관련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교부결정) 및 제18조(교부결정 통지)에 따라  
2025년 신립재해대책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불임과 같이 결정 통지하니, 신  
속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목 : 일반회계 2331-300(산림재해대책비, 본예산)
  - 내...용 : 8월(8.3~14.)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 [ 국고보조금 고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교부액	잔액	증지 누계액	예산잔액
330-03_부지 및 건물 보조	119,079,965	118,984,909	115,057	119,079,965	-

불임 1.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12회) 1부, +  
2.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내역(12회) 1부, +  
3.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내역(12회) 1부, +

산림청장

승인자: 서 ~~한국~~ 사장(산지발제과장) 경기도지사 산림청장(국장) 정한복 ~~한국~~ 사장(산림자원과장) 서

#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2차]

1. 산림재해대책비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명 : 산림재해대책비

보조사업자

○ 산림재해대책비사업([본예산](#)) : 3개 시·도(서울, 경기, 전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 <a href="#">본예산+추경</a> )	금회 교부액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의자부담
산림재해대책비	119,079,966	115,057		115,057	-

○ 보조비율 : 5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 비율)

○ 사업내용 : 산림분야 피해 복구사업 시행

교부 목적 : 8월(8.3~8.14.)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농림수산	102 임업·산촌	2300 산림재난관리	2331 산림재해대응 (일반)	300 산림재해대책비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교부 결정액(국비) : 115,057천원

##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본예산+추경)	교부 요청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자본보조	119,079,966	119,079,966	118,964,909	115,057	-

\* 교부결정 세부내역 : 별첨 참고

2.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년 10월

산 림 청 장

## 2025년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내역서[12차]

□ 내역사업명 : 산림재해대책비(2331-300-330-03, 자본보조, 본예산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국비)

구 분	예산액(내시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C)	교부 잔액 (A-B-C)	
	소계 (A=ⓐ+ⓑ)	본예산 (ⓐ)	추경 (ⓑ)	소계 (B=ⓒ+ⓓ)	본예산(ⓒ)				추경(ⓓ)					
	계	산사태	병해충	위험목제거	계	산사태	기타시설							
합계	119,079,966	91,279,345	27,800,621	118,964,909	91,164,288	28,120,288	62,789,000	255,000	27,800,621	27,392,319	408,302	115,057	-	
서울	239,712	239,712	-	200,000	200,000	-	200,000	-	-	-	-	39,712	-	
부산	268,000	268,000	-	268,000	268,000	-	268,000	-	-	-	-	-	-	
대구	3,894,000	3,894,000	-	3,894,000	3,894,000	-	3,894,000	-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	428,521	428,521	-	428,521	428,521	34,521	394,000	-	-	-	-	-	-	
대전	400,000	400,000	-	400,000	400,000	-	400,000	-	-	-	-	-	-	
울산	6,113,199	5,928,482	184,717	6,113,199	5,928,482	3,482	5,925,000	-	184,717	184,717	-	-	-	
세종	24,134	24,134	-	24,134	24,134	24,134	-	-	-	-	-	-	-	
경기	5,151,149	5,151,149	-	5,123,874	5,123,874	3,219,828	1,904,046	-	-	-	-	27,275	-	
강원	2,226,860	2,226,860	-	2,226,860	2,226,860	111,860	2,115,000	-	-	-	-	-	-	
충북	213,015	213,015	-	213,015	213,015	13,015	200,000	-	-	-	-	-	-	
충남	3,662,492	3,662,492	-	3,662,492	3,662,492	1,686,492	1,976,000	-	-	-	-	-	-	
전북	2,163,343	2,163,343	-	2,163,343	2,163,343	139,343	2,024,000	-	-	-	-	-	-	
전남	5,224,800	5,224,800	-	5,176,730	5,176,730	694,730	4,482,000	-	-	-	-	48,070	-	
경북	46,189,456	22,986,559	23,202,897	46,189,456	22,986,559	94,605	22,636,954	255,000	23,202,897	22,794,595	408,302	-	-	
경남	41,098,285	36,685,278	4,413,007	41,098,285	36,685,278	22,098,278	14,587,000	-	4,413,007	4,413,007	-	-	-	
제주	1,783,000	1,783,000	-	1,783,000	1,783,000	-	1,783,000	-	-	-	-	-	-	